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중지·폐지 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날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시행 구역	구역 명칭						시행면적		㎡		
	위 치						건축물		동 (무허가 동)		
	거주가구 및 인구		가구 (인)				도시계획		지역 지구		
	지목별	지목					국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동의 내용	토지면적			토지 소유자 수			건축물 소유자 수				
	대상면적	㎡		대상 소유자 수	인		대상 소유자 수	인			
	동의면적 (동의율)	㎡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사업 시행 계획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일			사업비		원			
	부지 명칭				대지면적		㎡	주 용도			
	건축면적		㎡	건축 연면적		㎡	지하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층수 (지상/지하)			주차장		대 ㎡					

사업 시행 계획	주택	공급 구분	주택 형태	동 수	세대 수	주택 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기준)					
		계									
		분양									
		임대									
	기반 시설	용도폐지 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 부담자 및 부담내용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건축물	철거	이전	공작물	철거	이전				
		동	동	개소		개소					
	개수대상 건축물		동	임시거주계획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필지 수	면적	권리자 수						
				m ²							
		건축물	동 수	연면적	권리자 수						
			m ²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수	임대주택 공급세대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대책 세대							

일괄 처리 사항	건축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축조신고) ()	골재채취허가 ()
	지도 등 간행심사 ()	사업 착수·변경·완료 신고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국유재산 사용허가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대기·수질·소음·진동배출 시설 허가·신고()	도로공사 시행허가 ()	도로점용허가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사도(私道)개설허가 ()

일괄 처리 사항	별채 등 허가 ()	사방지 지정·해제 ()	공장설립등의 승인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산지전용허가·신고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토석채취허가 ()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소방동의·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	소하천 점용허가 ()	수도사업 인가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
	분묘개장허가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	공공하수도 공사시행허가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
	하천공사 시행허가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	하천점용허가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변경·중지·폐지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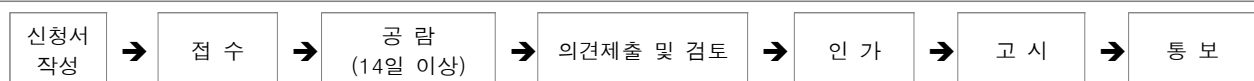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라.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다.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라.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